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129호 -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23조 및 전산망표준화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 10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표준화지침 제23조 및 전산망표준화지침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표준 또는 한국전산망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의 표준화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신청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표준 또는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의 통보) ①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는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가 당해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사무총장(이하 "협회총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전산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안을 제안하는 자 이외의 자가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협회총

장 또는 한국전산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확약서 제출)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거나 표준안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 당해 지적재산권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이용을 허용한다는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표준화 추진등) ①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약서가 제출된 경우 지적재산권의 이용조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적재산권을 대가없이 비차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
2. 지적재산권을 합리적 조건하에 비차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

②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준안과 당해 확약서를 통신표준총회 또는 전산망표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확약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1항에 의한 검토결과 확약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안 제안자에게 당해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수정된 표준안을 제출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요청한 표준안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적재산권의 명시) ①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출된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표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서의 주요내용이 명시된 표준을 고시하는 경우 당해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제7조 (표준제정후의 지적재산권 취급)

① 표준안을 제안한 자 또는 그 이외의 자가 고시된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협회총장 또는 한국전산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자에게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협약서의 제출여부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협약서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협약서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협약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서 관리) ①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지적재산권자가 제출한 협약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협약서의 내용을 열람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귀속)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지적재산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확성과 당해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
2. 지적재산권자와 표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
3. 협약서가 없이 제정된 표준에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
4.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제10조 (세부운영규정) 협회총장과 한국전산원장은 본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